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 - 제 호
----------	------------

제출 연월일 2020. 2. .

제출자 사천시장(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법령에 맞추어 명칭을 바꾸고, 사용료 면제 신청에 따른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본문 중 무형문화재전수관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으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

나.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 사용료 감면을 면제로 하고, 관련 서식을 추가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2. 31. ~ 2020. 1. 20.(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경남사천101										
정책명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이은주	전화번호 055-831-27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2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법령에 맞게 용어 개정하고자 함. 사용료 면제에 따른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통계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 <th style="width: 25%;">개선안 (법령 수정안)</th> <th style="width: 50%;">검토사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인원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인원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사용일시 (기간)</td></tr> <tr><td>사용목적</td></tr> <tr><td>사용인원 (남: 명/여: 명)</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파악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함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1항제3호 ⇒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td> </tr> </tbody> </table>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인원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사용일시 (기간)</td></tr> <tr><td>사용목적</td></tr> <tr><td>사용인원 (남: 명/여: 명)</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	사용일시 (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여: 명)	...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인원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예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사용일시 (기간)</td></tr> <tr><td>사용목적</td></tr> <tr><td>사용인원 (남: 명/여: 명)</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	사용일시 (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여: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파악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안함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1항제3호 ⇒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											
사용일시 (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여: 명)											
...											

		<p>한다.</p> <p>•「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5조(분석평가 정보지원체계의 구축 및 정보공개 등)제1항 ⇒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영역별 성별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한다.</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p>2020년 1월 10일 까지</p>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1월 0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한미애/055-831-2145)</p> <p>문화체육과장 귀하</p>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9A경남사천101		
정책명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양미란	전화번호 055-835-2019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p>○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의 사용인원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85%;"></td> </tr> <tr> <td>사용일시 (기간)</td> <td></td> </tr> <tr> <td>사용목적</td> <td></td> </tr> <tr> <td>사용인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남: 명/여: 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able>	...		사용일시 (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여: 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개선안 반영
...													
사용일시 (기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여: 명)												
...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2020년 01월 10일

문화체육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를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전수관” 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이하 “전수교육관” 이라 한다)이란 전수교육관, 전수동,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보유자”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전수관” 을 “전수교육관”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전수관” 을 각각 “전수교육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전수관” 을 “전수교육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관” 을 “전수교육관” 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수회관” 을 “전수교육관”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수관” 을 “전수교육관”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을 “(사용료의 면제)”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 을 “사용료 전액을 면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문학관련” 을 “문화예술관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 고 ” 를 “공익상 필요하다” 고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천시 <u>무형문화재전수관</u>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u>”(이하“<u>전수관</u>”이라 한다)이란 <u>전수관 본관(사무실, 대공연실, 물품보관실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u></p> <p>2.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 ----- <u>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u>----- ----- --.</p> <p>제2조(정의) ----- -----.</p> <p>1. “<u>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u>”(이하“<u>전수교육관</u>”이라 한다)이란 <u>전수교육관, 전수동,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3. “<u>보유자</u>”란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u>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u></p> <p>4. “<u>보유단체</u>”란 <u>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u></p>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전수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8조(사용허가) ①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5. (생략)
- ② (생략)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
-----.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
-----.

1. ~ 3. (현행과 같음)
4. ----- 전수교육관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교육관 -----
- 전수교육관-----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

-----.

1.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

----- 전수교육관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① -----
--- 전수교육관-----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전수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면제) ① -----

----- 사용료 전액을 면제 -----
-----.

1. (현행과 같음)
2. ----- 문화 예술 관련 -----

3. ----- 필요 하다고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
----- 전수교육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감독) ① -----
----- 전수 교육관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1】

무형문화재전수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소재지	비고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사천시 축동면 조창길 187-28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사천시 농악 전수교육관	사천시 구미1길 997(송포동)	

[개정안]
【별표 1】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소재지	비고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판소리 고법 판소리 수궁가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467	진주삼천포농악 가산오광대

[현 행]
【별표 2】

무형문화재전수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개정안]

【별표 2】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강당, 연습실 등 부대시설 (숙소 제외)	오전	20,000	냉난방 등 포함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강당 등 숙소 포함	1박(1실당)	·숙소 1~4호 : 100,000 ·숙소 5호 : 120,0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1박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명칭 (단 체)		설 립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위 탁 기 간

위탁대상시설

위 탁 목 적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
○ 전수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1부
-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신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명칭 (단체)		설립 년 월 일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위탁기간

위탁대상시설

위탁목적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
○○ 전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1부
-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수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2. 위.수탁 시설.장비

시 설 . 장 비 명	내 용 및 수 량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 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사천시

사천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을” ○○○○○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 ○○시 ○○동 ○○번지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2. 위.수탁 시설.장비

시 설 . 장 비 명	내 용 및 수 량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을”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갑”은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을”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을”은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무와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을”은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 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사천시

사천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을” ○○○○○

대표이사 ○○○ (인)

경상남도 ○○시 ○○동 ○○번지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비 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명, 여: 명)		
비 고	※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현행]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서

(앞면)

허가 번호 : 제 호			
허 가 내 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사용 인원		
전수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 용 료	금액		
	산출 내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시설 사용허가 조건

(뒷면)

- ① 관계 법령,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등 을 준수한다.
- ②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③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원상 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서

(앞면)

허가 번호 : 제 호			
허 가 내 용	사용자	성 명(단체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사용 인원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설물			
사 용 료	금액		
	산출 내역		
<p>「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조건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시설 사용허가 조건

(뒷면)

- ① 관계 법령,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등을 준수한다.
- ②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약하여야 한다.
- ③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원상 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신 설]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면제사유			
비 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관 련 법 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